

정보관리와 저작권

윤 선 영

〈이화여자대학교 문현정보학과 강사〉

1. 여는 글

정보화사회는 정보가 사회의 주체적인 역할을 하게 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이며, 이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정보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의 변화는 사회의 중심 기관으로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여 공중에게 제공함을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는 도서관에서도 변혁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러한 변혁은 도서관에 입수되는 정보의 유형도 그리고 이용자의 정보이용 방법은 물론, 도서관의 기능과 역할도 확대되면서 정보를 관리하는 중심기관으로서 그 위상을 달리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변화는 정보의 다양화 및 대량화와 함께 정보의 축적과 제공은 물론 이용자에 대한 정보관리자의 역할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정보화사회라고 할 때의 정보는 일반적이면서 특수한 성격을 지닌 것들을 망라적으로 의미한다. 그런데, 도서관의 기능을 하는 곳에서 이용 할 수 있는 정보는 대부분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물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보를 관리함에 있어서 저작권법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고에서는 정보관리자가 실제로 정보를 수

집하여 정리하고 이용함에 있어서 저작권법과의 적용 범위를 살펴보고자 한다.

2. 도서관에서 정보센터로

도서관이 문서를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어 인간 사회의 문화발전을 위한 매개체로서 그 역할을 더해 가면서 공공을 위한 봉사의 범위도 그 방법도 달라졌다. 인류 문화사에서 발전하는 사회와 사회를 연결해 주는 전승자로서 그리고 국가와 국가 간의 연결을 위한 전도자로서 중요한 사회조직인 도서관은 시대의 변화와 함께 발전하여 왔다. 이처럼 발전한 도서관은 크게 3세대 즉, 전통적인 도서관의 세대, 도서관 내의 업무 전산화를 이룬 도서관 자동화 세대, 그리고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의 교환이 가능한 전자도서관 세대로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도 한다.

제 1세대 – 전통적인 도서관(paper library) : 고대, 중세부터 발명되어 왔던 여러 종류의 분류법과 1879년대에 창안되었던 듀이십진 분류법(DDC)의 세대로 각각의 도서관에서 개성적인 사서가 모든 업무를 수행하면서 존경받던 시대이다. 제1세대 도서관은 전통

적인 개념을 연상할 수 있는 환경으로써 기기의 사용이 일반화 되기 이전의 도서관이라 할 수 있다.

제 2세대 – 전산화된 도서관 (automated library) :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된 컴퓨터 혁명으로 변화를 가져온 세대라고 할 수 있으며 MARC의 출현으로 전통적인 도서관 업무를 전산화하여 온라인 정보검색시스템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MARC와 온라인 정보검색 시스템에 의한 규격화, 분업화, 동시화, 집중화, 극대화 등이 이루어지고 기계화의 환경이 이루어져가는 시대이다. 제2세대 도서관은 컴퓨터를 비롯한 전자기기의 사용으로 업무의 전산화를 비롯하여 LAN을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를 통한 정보 이용 세대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제 3세대 – 전자도서관 세대(digital library) : 네트워크를 통하여 국경을 넘나들며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된 시대이다. 정보가 전자적 유통에 의해 편리하면서 개성적이고 창조성이 풍부하며 다양한 형태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용자에게 직접 접근할 수 있게 된 환경 즉, 정보의 전자화시대를 의미한다. 제3세대 도서관은 현재 우리가 생활하고 있는 환경으로 CD-ROM 데이터 베이스는 물론, 온라인에 의하여 정보관리가 수행되고 있는 전자적 환경의 도서관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변화해 온 도서관은 현재 전자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사회에 출현하고 있는 데, 이것은 우선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정

보를 전자화하여 관리하는 도서관으로 전자정보센터라 할 수 있다. 전자정보센터란 이처럼 정보관리의 전자화에 의해 운영되는 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서 도서관이 전자화되어 온 과정을 단계별로 구분하자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단계는, 도서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및 이용을 위한 과정들이 기계화되어 있고, 수집되는 정보매체의 형태가 인쇄물만이 아니라면 이런 환경도 초보적인 전자도서관(electronic library)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 단계로는, 기관내에서 이용자가 자기 책상에 앉아 도서관에 있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한 수준이 된 것이다 (on-line system, computerized). 세번째 단계로는, 관련기관끼리의 연계로 자신의 책상에 앉아 다른 기관에 소장되어 있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다. (networked system, digitised)

전자도서관이란 도서관 본래의 기능인 정보의 수집, 축적, 관리, 제공에 관한 일련의 과정을 전자적으로 구현하고,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도서관 시스템으로 디지털 도서관이라고 하며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이용이 가능한 환경을 의미한다.

디지털 도서관의 특징은 모든 정보를 디지털화하여 축적하고, 이용자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의 요구에 대한 민족도를 높이는 것 뿐만 아니라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디지털 도서관으로의 변모에 관심을 갖는 것은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 즉,

- 1) 디지털화 하는 비용이 서고의 공간확장 비용보다 저렴하다.
- 2) 전자적인 정보서비스의 방법이 전통적인 방법보다 이용자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편리하며 효율적이다.
- 3) 전자매체 형태의 정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 영향이 전자도서관 구축을 촉진하는 요인의 되기도 한다.

또한, 실질적으로 정보를 관리하고 보다 많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정보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전자도서관이 구축되어야 할 필요성과 기대효과를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다.

- 1) 방대하고 다양한 멀티미디어 정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 2) 개별적이고 다양한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신속, 정확, 편리하게 만족시킬 수 있다.
- 3) 대량의 정보를 디지털화 하므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 4) 네트워크를 통해 시간과 공간에 구애됨이 없이 정보접근과 정보 교환을 할 수 있다.
- 5) 고품질, 고수준의 정보검색을 지원할 수 있다.
- 6) 디지털화된 정보를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다.
- 7) 새로운 정보에 대한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 8)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고자 하는 이용자의 기대감을 충족시킬 수 있다.

- 9) 첨단화된 컴퓨팅 기술과 통신기술을 충분히 응용할 수 있다.
- 10) 전자출판의 발달로 첨단화된 정보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런데, 네트워크 사회에서는 정보의 축적 및 전달 매체가 디지털화 되어 정보이용의 효율성과 극대화라는 측면도 있으나 정보의 디지털화와 관련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그것은 디지털화 된 정보는 복제가 쉽고, 복수자에게 전송이 가능하며 다수자와 접근이 쉽고, 수정 또는 가공이 쉬워 단편화하거나 다른 정보와 합성하기도 쉽다는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가장 큰 문제는 대량의 정보가 축적되고 변형되어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자 사이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최종 이용자의 이용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더 나아가 멀티미디어 사회에서는 이용자가 저작권이 있는 저작물을 자신의 창작행위를 위한 소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때문에 권리처리가 대단히 큰 부담이 되고 있다.

3. 저작권이란?

저작권은 1707년에 영국의 서적상 조합이 청원서를 제출하여 제정한 '앤 여왕법'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이것은 인쇄술의 발명으로 증가하게 된 저작물의 출판과 판매를 맡아 오던 서적상들이 저작물에 관련하여 독점권을 갖고자 하

면서 저작자의 창작성을 촉진하는 의도라고 볼 수 있다. 인쇄술의 발명은 정보를 종이에 직접 기록하여 보존하던 사회에서 저작물을 오래 보존하고 널리 배포할 수 있는 수단으로 등장하게 되었고 인류 역사에서 특히 출판사의 발달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사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저작물이 대량으로 정확하게 만들어 질 수 있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공간의 제약을 벗어나 저작물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끼치게 되었을 것이다. 이처럼 변화되는 사회에서 출판업자들은 보다 많은 저작물이 창작되고 출판되어 널리 배포됨에 따라 지적 내용을 창작한 저작자(개인)의 명성을 인정하고 보호해 주기 위한 방안으로 저작권의 보호를 위한 법을 제정해 줄 것을 국가에 요구하면서 저작권법이 비롯 되었다. 즉, 인격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저작자의 명예를 인정해 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소유권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 최선의 보호방안이라고 인식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는 저작권의 보호에 대해서도 점차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지적 내용에 대한 보상, 다시 말해서 창작성에 대한 보호가 지적 노력의 댓가를 저작자에게 지불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저작권은 인격적 권리(인격적 권리(moral rights)과 재산적 이익을 보호하는 저작재산권(economic rights))으로 구분된다. 저작인격권은 저작자의 인격에 직접 관계되는 권리로서 저작자 자신만이 누릴 수 있는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이다. 저작자의 인격에 대하여 인

정하는 권리에는 저작자 만이 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첫째는 자신의 이름을 표시하는 것과 관계되는 성명표시권이 있고, 둘째는 자신이 저술한 저작물에 표현한 내용을 원래대로 기록하는 것에 대한 동일성유지권이 있으며, 셋째는 자신의 저작물을 널리 공개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수 있는 공표권이 있다. 저작인격권은 어떤 권리도 원저작자 자신만이 결정하고 주장할 수 있는 배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존중권’이라고도 하는데, 원저작자에게만 속하는 일신전속성이라는 점에서 원저작자의 사망과 함께 소멸한다는 견해도 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에게 자신의 노력에 대한 대가를 경제적으로 환산하여 받을 수 있는 재산적 권리로서, 권리의 성격에 따라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양도할 수도 있고 원저작권자의 사후에는 상속할 수 있다. 저작재산권이 저작인격권과 다른 점은 자신의 창작성에 의한 산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고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이다. 또한, 저작재산권은 원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원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 재산적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하기 때문에 상속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다. 이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다른 표현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권리로서, 저작물 사용권,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및 배포권 그리고 이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된다.

이와같은 원저작자의 창작성에 의한 산물을 존중하는 권리를 공공연하게 인정하고 보호해

주기 위하여 제정한 저작권법이란 저작자, 실연가의 보호를 도모하고, 저작물 등의 문화적 산물의 공정 이용을 도모하며, 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저작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함과 동시에 그 권리를 인정해 주고 있는데, 누군가에 의해 저술된 모든 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법에 의해 저작권이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저작물은 다음 세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될 때 보호받을 수 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해 낸 의미형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첫째, 저작물이 되기 위하여는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어야 한다. 둘째로는 창작물로서의 독창성이 있어야 하며, 셋째로는 다른 사람이 감지하여 이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표현되어 있어야만 저작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요건을 갖춘 저작물은 어떤 형상으로 표현되어 있는가에 따라, ①어문 저작물 ②음악 저작물 ③연극 저작물 ④미술 저작물 ⑤건축 저작물 ⑥사진 저작물 ⑦영상 저작물 ⑧도형 저작물 ⑨컴퓨터 프로그램 등으로 나누어 예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저작물로서의 일반적 요건을 갖추면 법률상의 보호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저작권법 제7조는 일반적 요건을 갖춘 저작물이라 할지라도 그 용도로 보아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할 저작물에 대하여는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하지 않는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조항에 명문화 된 저작물은 '비보호 저작물'이라고 정의하여 저작자 또는

소유자로 부터 사용을 위한 허락을 얻지 않고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의 대상이 되도록 저작권법에 명시한 비보호 저작물은 다음과 같다. ①법령 ②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③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장심판 절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④국가 또는 지방 공공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⑤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⑥공개한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의 연설(비공개로 한 법정, 의회의 연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게 된다.)

저작권의 기본 개념은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지적창작물의 표현 형태가 다양화되고 전달방법도 첨단화되어 감에 따라 인간의 지적활동에 의한 산물에 대하여 법적인 보호의 폭을 넓혀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종래의 저작권법은 문화적 성격을 띤 창작적 표현을 보호하면서 주로 복제권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과학 및 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뉴미디어나 소프트웨어의 출현은 기존의 법체계를 멀티미디어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체계로 재정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4. 정보관리와 저작권법

정보관리란 정보의 수집에서 보존을 위한 정리를 거쳐 정보를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일련의 처리과정을 의미한다. 도서관에서의 정보관리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도서관도 정보센터로서 그

기능이 확대되고 정보의 수집, 축적과 제공의 방법이 달라지고 있지만 여전히 중추적인 업무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정보에 관한 필요성이 보편화 되었고, 이용자를 위한 정보제공의 방법도 다양화되면서 개별화가 가능하게 되고 있다. 이처럼 사회의 발전에 따라 정보가 대량화되면서 다양화하고 있는데 정보센터에서 정보를 수집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는 정보관리에 대해 저작권법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저작권법에 명시된 조항에 관련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정보관리자는 정보를 입수하여 정리함에 있어서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에 대해서도 그 약속을 지켜오고 있다. 이용자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하여 정보원에 접근하는 수단으로 정보관리자는 목록을 작성하여 접근점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보원에 제시된 서지정보를 목록으로 작성할 때 원저작물의 표제지에 표현된 그대로 기록함을 원칙으로 하는 것은 동일성유지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정보원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하여 정보를 컴퓨터를 사용하여 입력할 때에는 원저작물의 표제지에 표현된 그대로 입력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래서,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정보의 저장 및 전달 수단도 변화하였으므로 정보관리의 측면에서도 동일성유지권의 적용 범위는 완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저작재산권에 관련하여서는 저작권법 상에서 이용자가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을 사용할 때마다 허락을 받지 않고서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허용범위를 명시

하고 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재산권의 제한’이라고 11종의 특례를 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하여도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어느 경우에도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며 반드시 출처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중 도서관에서의 정보이용과 관련되는 조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25조]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제27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제28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한 도서관 및 도서, 문서, 기록 그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하 ‘도서관 등’이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보관된 자료를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다.

1.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1인 1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2. 도서관 등이 자료의 자체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저작물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30조] 점자에 의한 복제

(1) 공표된 저작물은 앞을 못보는 사람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할 수 있다.

- (2) 앞을 못보는 사람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에서는 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녹음할 수 있다.

저작권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저작권법 시행령 제3조(복제를 할 수 있는 시설)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하며, 제30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하는 것도 동 시행령 제4조(앞을 못보는 사람들을 위한 녹음이 가능한 시설)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이다.

시행령 [제3조] 복제를 할 수 있는 시설

법 제2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및 특수도서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설립한 특수도서관을 제외한다)
 2. 국가, 지방자치단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도서, 문서, 기록 그밖의 자료를 보존, 대출 기타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서 문화체육부장관이 도서, 문서, 기록 그밖의 자료를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 [제4조] 앞을 못보는 사람들의 이용을 위한 녹음이 가능한 시설

법 제3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 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설치, 운영하는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 가. 시각장애인 재활시설
 - 나. 점자 도서관
 - 다. 장애인 요양시설과 장애인 근로시설 중 시각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
2. 교육법 및 특수교육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특수학교 및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특수학급을 둔 각급학교.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시각장애인의 교육, 학술 및 연구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작권법 제25조, 제27조, 제28조-1항에 의거하여 우리는 도서관 등에서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복제 또는 인용에 의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용자가 타인의 저작물에서 일정 부분을 인용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인용한 저작물에 관한 정보 즉, 정보의 출처를 관행에 따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이용자는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저작물 중에서 자신의 요구에 적합한 정보를 복제에 의한 방법으로 입수 할 수가 있는데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하고 있다. 이용자가 복제를 할 수 있는 일부분이란 통상적으로 학술지에서는 게재된 논문 중 논문 한 편을 1회에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리고, 단행본의 형태로 된 저작물에 있어서는 전체의 3분의 1 이내의 한계를 1회에 복제할 수 있는 일부분의 범위로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저작권

법에 의해 인정하고 있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의 허용 대상은 개인이 자신의 연구 또는 교육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공정사용은 그 허용범위와 제한 기준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멀티미디어의 사용이 증가되는 정보화사회에서도 여전히 저작물의 공정 사용을 명문화하여 비영리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연구를 위한 용도라면 허용할 것이다.

5. 닫는 글

우리의 환경은 정보 관리자나 이용자가 이와 같은 법적 근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서 그저 막연하게 도서관에서의 사용이기 때문에 정당하다는 생각이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인용에 의한 방법으로 쉽게 사용하고 있다. 멀티미디어 시대의 성장기라고 하는 20세기의 말미에서 우리는 정보의 디지털화 더 나아가 도서관의 전자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도서관은 정보화사회에서 정보 요구자가 정보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정보 제공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기능이 확대 되었다. 고도정보화사회에서 도서관은 정보센터로서 중개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고, 정보관리자는 이용자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지도해주는 정보안내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보관리자는 정보제공 뿐만 아니라,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이용자의 다면적인 요구에 대응 할 수 있는 정보전문가로 그 입지가 강화될 것이다.

참고문헌

- 이상정, “이용자를 위한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계간 저작권, 35:75-83, 1996.
- 장순걸, 박덕영 “디지털 도서관에 있어서 저작권에 관한 고찰.” 주간기술동향 700:281-296, 1995.
-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편. 著作權 用語 解說. (1988)
- 장인숙. 저작권법 원론. 서울, 보진제, 1996.
- 전영표. 정보사회와 저작권. 서울;법경출판사, 1993.
- 허희성, “著作權의 保護 對象은 內容이 아닌 表現形式이다.” 계간 저작권, 24:50-54, 1993.
- 名和小太郎, “現代の 著作權 問題と その 環境.” 人文學と情報處理, No.5:3-7, 1995.
- 半田正夫, “マルチメディア 時代の 著作權.” 情報の科學と技術, 45(6): 254-259, 1995.
- 北村行夫, “マルチメディアと 知的所有權.” 情報管理 38(11):1029-1038, 1996.
- 山本隆司, “ネットワーク社會における 著作權 問題.” コピライ트, No.425:2-19, 1996.
- 山地克郎, “デジタル 技術が 著作權に 與える 影響.” 人文學と情報處理 No.5:52-57, 1995.
- 日本圖書館協會, “圖書館と著作權” 圖書館年鑑, 1994:127-129.
- Bennett, Scott. 1995. “The Manag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Computers in Libraries 14(5):18-20.

Bernstein, Robert J. 1993. "Copyrights in the New Age of Interactive Multimedia." IEEE Comm. Magazine Dec.:60~62.

Kurlantzick, Lewis. 1994. "Harmonization of Copyright Protection." EIPR 16(11):463~464.

Leonard, P. G. 1995. "Beyond the Future ;

Multimedia and the law." Information Online & On Disc 95:91~110.

Mecher, Heather J. 1994. "Multimedia and Copyright." Rutgers Computer & Technology Law J 20(1):375~414.

자료 〈3〉 '도서관과 저작권' 문제에 관한 주요 참고문헌 : 연속간행물기사

* 자료출처 : 국회도서관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anet.go.kr>) 문현관련자료 코너

* 기사명 가나다순으로 기재, 서지사항은 기사명/저자명/발행년도/수록잡지명 순으로 기재

- NII와 저작권/전석진/1996/국회도서관보250('96.12):30~45쪽
- OCLC 書誌데이터베이스 著作權 保護에 관한 연구/홍재현/1992/도서관321('92.8):32~40쪽
- 公共貸出權과 著作權/이순자/1995/저작권32('95.12):19~34쪽
- 圖書館에서의 複製와 著作權/한승현/1986/국회도서관보187('86.10):5~12쪽
- 도서관에서의 저작권/정상조/1996/국회도서관보250('96.12):10~14쪽
- 도서의 대여권에 관한 고찰/김기태/1995/출판연구7('96.12):235~248쪽
- 디지털도서관에 있어서 저작권에 관한 고찰/정순걸, 박덕영/1995/주간기술동향700('95. 6. 14): 281~296쪽
-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문제에 관한 소고/김정란/1997/국립대학도서관보 15('97.5):69~82쪽
- 디지털 시대의 전자복제와 관련된 저작권 문제 : 문현배달서비스를 중심으로/홍재현/1996/도서관341('96.12):56~80쪽
-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저작권적 해석에 관한 연구 : 코퍼스를 중심으로/남영준/1997/정보관리 학회지 26('97.6) 161~181쪽
- 디지털정보의 저작권관리시스템/윤선영/1996/정보관리연구27.4('96.12):20~34쪽
- 서지데이터베이스의 著作權 문제가 문헌정보의 流通에 미치는 影響 : OCLC와 LC의 事例를 중심으로/이제환/1994/도서관학논집21('94.12):325~261쪽
- 서지유ти리티 데이터베이스의 저작권 보호와 이용에 관한 연구/홍재현/1993/정보관리학회지19('93.12): 111~143쪽
- 저작권과 도서관 운영/전선희/1988/圖書館研究 5('88.12):93~97쪽
- 저작권보호와 도서관에서의 저작물 공정사용에 관한 연구/이순자/1988/국회도서관보 199('88.10):23~29쪽
- 저작권에 있어서 「著作役割語」의 개념/이천효/1996/국회도서관보250('96.12):46~65쪽
- 전자도서관과 저작권/황찬현/1996/국회도서관보250('96.12):15~29쪽
- 전자매체시대의 저작권/윤선영/1996/국회도서관보250('96.12):66~77쪽
- 전자매체와 저작권/윤선영/1997/도서관문화302('97.2):35~48쪽
- 지적재산권의 역사적 源源: 저작권과 특허를 중심으로/황혜선/1993/도서관학논집20('93.12):455~470쪽
-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계획과 멀티미디어 저작권/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1995년/데이터베이스월드 25 ('95. 6) : 83~88쪽